



##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 10. 14.] [법률 제18041호, 2021. 4. 13., 일부개정]

개정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,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(i)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·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(제11조의2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).
- (ii)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되었습니다(제12조 제1항 제2호).
- (iii) 감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제18조의2).
- (iv)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,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(제18조의4).

### 관련구성원

#### 기영석

변호사

02-316-4021

ysgi@shinkim.com

#### 박성기

변호사

02-316-4280

skipark@shinkim.com

#### 김종수

변호사

02-316-1678

jsokim@shinkim.com

---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